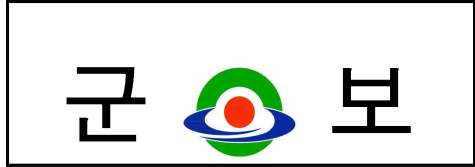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69호 2024. 11. 7.(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37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4-138호)

공 고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534호)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538)
-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4-1552호)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예천군 공고 제2024-1558호)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예천군 공고 제2024-1558호)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 2024-1560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64)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내 대로3-9호선 신설을 위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전체조서 [별첨2] 참고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 교통시설(도로) 외 변경 없음
- 1) 교통시설 : 도로
 - (1)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 계	기정	84	19,375	41	5,434	22	7,903	21	6,038	
	변경	85	19,443	41	5,434	22	7,903	22	6,106	
일반 도로	계	기정	57	17,611	26	4,381	18	7,362	13	5,868
		변경	58	17,679	26	4,381	18	7,362	14	5,936
	광로		1	2,766	-	-	1	2,766	-	-
	대로	기정	8	6,163	-	-	3	2,413	5	3,750
		변경	9	6,231	-	-	3	2,413	6	3,818
	중로		23	6,111	8	2,288	10	2,131	5	1,692
	소로		25	2,571	18	2,093	4	52	3	426
	계		27	1,764	15	1,053	4	541	8	170
보행자 도로	중로		4	541	-	-	4	541	-	-
	소로		23	1,223	15	1,053	-	-	8	170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9	28	집산 도로	68	광로2-1(예)	대로3-8	일반 도로		-	

※ 1-문화공원(1,395㎡), 2-유수지(582㎡)와 중복결정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3-9호선	• 대로3-9호선 신설 (B=28m, L=68m)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라. 가구 및 획지, 건축물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 제1편제1장제4조제7항 삭제(가설건축물 관련 내용) : [별첨1] 참고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별첨1]경북도청이전신도시(1단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

기 정	변 경
제1편 총론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교육환경평가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이하 사군)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군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지침의 이해를 돕고, 지침의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한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⑥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u>⑦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가설건축물은 관련공사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이외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u> ⑧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⑨ 본 시행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통합영향평가(환경, 교통),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에너지사용계획, 교육환경평가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수립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관련법규 및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이하 사군)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본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사군 조례 등 관련 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시행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예시도”는 지침의 이해를 돕고, 지침의 목표나 방향을 가시화 한 것으로, 지침과 동등한 효력을 지닌다. ⑤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을 작성하여 적용하되, 별도의 지침이 명시되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지침을 적용한다. ⑥ 대지상호간 분할·합병 등으로 서로 상이한 지침이 적용될 경우 그 규제내용은 전면도로가 가장 넓은 획지에 적용되는 지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u>⑦ <삭제></u> ⑧ 본 지침 시행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다. ⑨ 본 시행지침은 차후 지역여건이나 대지의 환경이 변화되어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첨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예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1. 예천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예천군 호명읍 일원	2,082,054.8	-	2,082,054.8	

II.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082,054.8	-	2,082,054.8	100.00	
주거 지역	소 계	1,189,686.6	-	1,189,686.6	57.14	
	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721,143.9	-	721,143.9	34.6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1,124.7	-	101,124.7	4.86	
	제2종일반주거지역	246,131.3	-	246,131.3	11.82	
	제3종일반주거지역	373,887.9	-	373,887.9	17.96	
	준주거지역	468,542.7	-	468,542.7	22.5	
상업 지역	소계	276,764.2	-	276,764.2	13.29	
	일반상업지역	176,097.6	-	176,097.6	8.46	
	근린상업지역	100,666.6	-	100,666.6	4.83	
녹지 지역	소계	615,604.0	-	615,604.0	29.57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615,604.0	-	615,604.0	29.57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개소	-	-	636,865.2	-	-		
기정	1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예천군 호명읍 일원	636,865.2	-	-	경고14-96 (2014.3.1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

○ 도로 총괄표

구 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84	19,375	473,323.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1	6,038	129,644.2
			변경	85	19,444	475,300.3	41	5,434	82,505.1	22	7,903	261,174.0	22	6,107	131,621.2
일반 도로	계	기정	57	17,611	453,643.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3	5,868	128,627.4	
		변경	58	17,680	455,620.2	26	4,381	71,957.5	18	7,362	253,058.3	14	5,937	130,604.4	
	광로		1	2,766	143,588.7	-	-	-	1	2,766	143,588.7	-	-	-	
	대로	기정	8	6,163	179,767.6	-	-	-	3	2,413	73,722.4	5	3,750	106,045.2	
		변경	9	6,232	181,744.6	-	-	-	3	2,413	73,722.40	6	3,819	108,022.2	
	중로		23	6,111	106,694.4	8	2,288	50,545.0	10	2,131	35,314.7	5	1,692	20,834.7	
	소로		25	2,571	23,592.5	18	2,093	21,412.5	4	52	432.5	3	426	1,747.5	
	보행자 도로	계	27	1,764	19,680.1	15	1,053	10,547.6	4	541	8,115.7	8	170	1,016.8	
중로		4	541	8,115.7	-	-	-	4	541	8,115.7	-	-	-		
소로		23	1,223	11,564.4	15	1,053	10,547.6	-	-	-	8	170	1,016.8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1	50~55	주간선도로	2,7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도로	388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3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263	광로 2-1(예)	대로 3-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2	3	30	주간선도로	76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1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1	28	집산도로	843	광로 2-1(예)	대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2	28	집산도로	1,518	대로 2-1(예)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3	28	집산도로	892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4	28	보조간선도로	145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대로	3	5	25	주간선도로	352	대로 2-2(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4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신설	대로	3	9	28	집산도로	69	광로2-1(예)	대로3-8	일반도로		-	
기정	중로	1	1	21	집산도로	298	광로 2-1(예)	대로 3-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2	21	집산도로	263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3	21	집산도로	281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4	21	집산도로	306	광로 2-1(예)	대로 3-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5	21	집산도로	296	대로 3-2(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6	24	집산도로	33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02	대로 3-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401	광로 2-1(예)	광로 2-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1	8	21	집산도로	109	광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1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	16	국지도로	199	대로 3-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2	16	국지도로	690	중로 1-1(예)	중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3	16	국지도로	56	대로 3-1(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4	16	국지도로	135	중로 2-2(예)	중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	16	국지도로	610	중로 1-2(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6	16	국지도로	58	대로 3-2(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7	16	국지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8	16	국지도로	110	중로 2-5(예)	중로 2-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9	16	국지도로	107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0	16	국지도로	106	대로 3-3(예)	중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2	11	15	특수도로	143	광로 2-1(예)	중로 2-9(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2	15	특수도로	90	중로 2-9(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3	15	특수도로	203	광로 2-1(예)	중로 2-10(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2	14	15	특수도로	105	중로 2-10(예)	수변공원 9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중로	3	1	13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2	13	국지도로	176	중로 1-4(예)	중로 1-3(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47	광로 2-1(예)	대로 2-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73	대로 2-2(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769	대로 3-4(예)	중로 1-8(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9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2	소로 1-6(예)	소로 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7	중로 1-3(예)	중로 1-2(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54	소로 1-6(예)	소로 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76	소로 1-7(예)	소로 1-7(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85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36	중로 3-2(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70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36	소로 1-14(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89	소로 1-15(예)	소로 1-9(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43	소로 1-13(예)	소로 1-11(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01	중로 1-3(예)	중로 1-4(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1	소로 1-15(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58	소로 1-16(예)	소로 1-16(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5	소로 1-17(예)	소로 1-15(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19	10	특수도로	101	대로 3-2(예)	경관녹지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0	10	특수도로	144	중로 1-1(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1	10	특수도로	100	중로 2-2(예)	중로 2-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2	10	특수도로	50	광로 2-1(예)	중로 2-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3	10	특수도로	65	대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4	10	특수도로	64	중로 2-8(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5	10	특수도로	55	중로 2-8(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6	10	특수도로	52	중로 1-2(예)	광장 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7	10	특수도로	60	광로 2-1(예)	중로 2-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8	10	특수도로	41	광로 2-1(예)	중로 3-4(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29	10	특수도로	37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0	10	특수도로	36	광로 2-1(예)	중로 3-5(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1	10	특수도로	148	광로 2-1(예)	근린공원 2 (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1	32	10	특수도로	112	중로 1-6(예)	소로 1-49(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1	33	10	특수도로	48	중로 2-13(예)	중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5-291 (2015.9.4)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1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3	소로 1-7(예)	공공공지 2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3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3	소로 1-16(예)	공공공지 4 (예)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100	대로 2-1(예)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8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2	4	국지도로	13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2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19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0	일반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5	중로 3-2(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8	광로 2-1(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31	광로 2-1(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5	중로 1-4(예)	소로 1-16(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16	중로 1-2(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5	중로 1-3(예)	소로 1-7(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25	중로 3-1(예)	대로 3-2(예)	보행자전용 도로		경고12-230 (2012.7.31)	

※ 대로3-9호선 1-문화공원(1,395㎡), 2-유수지(582㎡)와 1,977㎡ 중복결정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대로3-9호선	- 대로3-9호선 신설 - B = 28m - L = 69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2,553.5	-	22,553.5		
기정	1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	2,540.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	2,171.8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	2,000.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	2,868.6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	1,396.7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	3,248.5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	2,396.4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	1,947.4	경고12-230 (2012.7.31)	
기정	9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	1,876.1	경고12-230 (2012.7.31)	
기정	10	주차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	2,106.6	경고12-230 (2012.7.31)	

나. 공간시설 (변경없음)

1)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457.3	-	5,457.3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4	2,581.5	-	2,581.5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48	2,875.8	-	2,875.8	경고12-230 (2012.7.31)	

2)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6,851.7	-	406,851.7		
소 계					184,887.2	-	184,887.2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4	56,640.3	-	56,640.3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6	128,246.9	-	128,246.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50.9	-	750.9		
기정	1	공원	소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96	750.9	-	750.9	경고12-230 (2012.7.31)	
소 계					7,890.1	-	7,890.1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2	1,669.3	-	1,669.3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0	3,145.6	-	3,145.6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5	3,075.2	-	3,075.2	경고12-230 (2012.7.31)	
소 계					13,165.3	-	13,165.3		
기정	1	공원	체육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7	13,165.3	-	13,165.3	예천군고시 제2022-68호 (2022.7.18.)	
소 계					200,158.2	-	200,158.2		
기정	1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0 일원	46,241.2	-	46,241.2	-	도로 중복
기정	2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8 일원	28,317.0	-	28,317.0	-	도로 중복
기정	3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7 일원	46,522.7	-	46,522.7	-	도로 중복
기정	4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0 일원	67,533.2	-	67,533.2	-	
기정	5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9	5,238.4	-	5,238.4	-	
기정	6	공원	문화공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48	6,305.7	-	6,305.7	-	

※ 지구내 면적 중 문화공원1,2,3은 도로(3,224.6㎡) 포함

3) 녹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758.5	-	114,758.5		
소 계					14,925.6	-	14,925.6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3	439.2	-	439.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1	571.2	-	571.2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6	1,073.4	-	1,073.4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8	927.9	-	927.9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6	3,254.4	-	3,25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7	1,900.1	-	1,900.1	경고12-230 (2012.7.31)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18	2,741.9	-	2,741.9	경고12-230 (2012.7.31)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20	4,017.5	-	4,017.5	경고12-230 (2012.7.31)	
소 계					99,832.9	-	99,832.9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6 일원	46,959.0	-	46,959.0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1	35,605.0	-	35,605.0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1	5,091.6	-	5,091.6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9	7,280.7	-	7,280.7	경고12-230 (2012.7.31)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37	555.4	-	555.4	경고14-96 (2014.3.17)	
기정	6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3	1,262.6	-	1,262.6	경고14-96 (2014.3.17)	
기정	7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89	1,551.6	-	1,551.6	경고14-96 (2014.3.17)	
기정	8	녹지	경관녹지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5	1,527.0	-	1,527.0	경고14-96 (2014.3.17)	

4)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257.4	-	257.4		
기정	1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32	64.2	-	64.2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40	64.4	-	64.4	경고12-230 (2012.7.31)	
기정	3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5	64.0	-	64.0	경고12-230 (2012.7.31)	
기정	4	공공공지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79	64.8	-	64.8	경고12-230 (2012.7.31)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없음)

1) 전기공급설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4.0	-	144.0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케이블헤드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	144.0	경고14-96 (2014.3.17)	

2) 공동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연장 (k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1	공동구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501	-	1.9	6,459.7	경고14-96 (2014.3.17)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없음)

1) 학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0,858.5	-	40,858.5		
소 계					19,748.0	-	19,748.0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	19,748.0	경고12-230 (2012.7.31)	
소 계					21,110.5	-	21,110.5		
기정	1	학교	고등학교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	21,110.5	경고12-230 (2012.7.31)	

마. 방제시설 (변경없음)

1) 하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기정	7	하천	지방 하천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800 일원	예천군 지보면 수월리 855-28번지선 내성천(국가)합류점	7.262 (0.02)	25~110 (38)	435,240 (902.9)	-	송평천

※ ()는 사업지구내 포함부분임

2) 유수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6,493.5	-	16,493.5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2	3,102.8	-	3,102.8	경고12-230 (2012.7.31)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2	13,390.7	-	13,390.7	경고12-230 (2012.7.31)	

바. 환경기초시설 (변경없음)

1) 하수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537.9	-	2,537.9		
기정	1	하수도	오수중계 펌프장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	2,537.9	경고12-230 (2012.7.31)	

Ⅲ.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 계		48,897.2	160필지	48,897.2	
소 계		18,970.7	61필지	18,970.7	
D-1	1	4,151.6	1	299.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에도 당초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98.6	
			3	294.2	
			4	291.0	
			5	300.2	
			6	300.5	
			7	298.9	
			8	298.2	
			9	295.9	
			10	294.1	
			11	288.2	
			12	297.5	
			13	297.5	
			14	297.5	
	2	904.3	1	302.5	
			2	299.5	
			3	302.3	
	3	1,229.5	1	308.0	
			2	306.1	
			3	308.6	
			4	306.8	
	4	1,872.8	1	313.6	
			2	312.7	
			3	311.4	
			4	312.8	
			5	311.4	
			6	310.9	
	5	928.4	1	309.4	
			2	310.1	
			3	308.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1	6	973.8	1	324.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24.1	
			3	325.5	
	7	2,598.9	1	326.0	
			2	325.4	
			3	325.3	
			4	324.1	
			5	325.6	
			6	324.8	
			7	324.5	
			8	323.2	
	8	922.7	1	307.2	
			2	307.2	
			3	308.3	
	9	657.3	1	328.6	
			2	328.7	
	10	2,594.3	1	325.1	
			2	324.8	
			3	325.2	
			4	321.8	
			5	325.2	
			6	324.6	
			7	324.7	
			8	322.9	
	11	623.9	1	311.9	
			2	312.0	
	12	598.6	1	300.6	
			2	298.0	
	13	914.6	1	306.4	
			2	305.4	
			3	302.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소 계		29,926.5	99필지	29,926.5	
D-2	1	3,118.6	1	310.2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09.8	
			3	310.0	
			4	309.7	
			5	309.6	
			6	314.7	
			7	313.8	
			8	313.7	
			9	313.6	
			10	313.5	
	2	1,606.5	1	269.5	
			2	267.2	
			3	267.1	
			4	268.8	
			5	267.2	
			6	266.7	
	3	994.0	1	334.6	
			2	329.1	
			3	330.3	
	4	2,424.1	1	299.7	
			2	298.2	
			3	298.3	
			4	297.6	
			5	307.8	
			6	307.5	
			7	307.8	
			8	307.2	
	5	2,172.5	1	272.7	
			2	270.9	
			3	271.6	
			4	271.5	
			5	272.3	
			6	270.8	
			7	271.5	
			8	271.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6	1,338.2	1	267.7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267.7	
			3	267.9	
			4	268.1	
			5	266.8	
	7	1,795.6	1	302.1	
			2	301.6	
			3	296.0	
			4	300.2	
			5	300.8	
			6	294.9	
	8	920.0	1	306.1	
			2	306.0	
			3	307.9	
	9	2,596.5	1	325.9	
			2	324.2	
			3	324.5	
			4	325.5	
			5	325.2	
			6	323.4	
			7	323.4	
			8	324.4	
	10	2,345.6	1	289.6	
			2	287.3	
			3	287.2	
			4	287.3	
			5	300.3	
			6	298.2	
			7	298.3	
			8	297.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D-2	11	933.3	1	312.2	- 연결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합병하는 경우 당초 지정된 개별 획지 당 가구 수의 합을 초과 할 수 없음 - 획지분할 불허
			2	311.6	
			3	309.5	
	12	621.1	1	311.3	
			2	309.8	
	13	2,596.4	1	326.1	
			2	324.3	
			3	324.4	
			4	325.4	
			5	324.7	
			6	323.3	
			7	323.5	
			8	324.7	
	14	2,564.5	1	319.1	
			2	317.4	
			3	317.4	
			4	317.5	
			5	324.4	
			6	323.1	
			7	322.6	
			8	323.0	
	15	1,787.4	1	298.0	
			2	297.4	
			3	298.0	
			4	298.2	
			5	298.5	
			6	297.3	
	16	1,488.0	1	298.9	
			2	298.1	
			3	298.3	
			4	298.3	
			5	294.4	
	17	624.2	1	311.6	
			2	312.6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481,865.2	12필지	481,865.2	- 인접한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사업단위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지정된 주택의 유형에 따른 세대수는 합산하도록 하고, 용적률은 면적비례로 합산한 평균 수치로 한다. - 획지분할 불허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B-1	-	82,137.3	1	38,905.1			제3종 일반주 거지역
			3	31,232.2			
			4	12,000.0			
B-2	-	88,447.7	1	46,020.2			
			2	42,427.5			
B-3	-	79,372.5	1	79,372.5			제2종 일반주 거지역
B-4	-	59,903.4	1	34,252.6			
			2	25,650.8			
B-5	-	26,535.5	1	26,535.5			제3종 일반주 거지역
B-6	-	55,901.2	1	55,901.2			
B-8	-	89,567.6	1	48,917.3			
			2	40,650.3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1,002.8	18필지	11,002.8	
근생1	-	1,521.5	1	485.8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2	534.3	
			3	501.4	
근생2	-	1,442.0	1	494.5	
			2	493.0	
			3	454.5	
근생3	-	2,062.2	1	492.2	
			2	523.9	
			3	523.8	
			4	522.3	
근생4	-	1,837.8	1	527.3	
			2	480.9	
			3	465.0	
			4	364.6	
근생9	-	4,139.3	1	1,010.3	- 연접한 2개 획지에 한하여 획지합병 허용 (합병한 획지는 다른 획지와 합병 불허) - 획지분할 불허. 단, 근생10은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2	1,071.8	
			3	1,064.3	
			4	992.9	

라. 상업·업무용지

1)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56,950.9	42필지	56,950.9	
상1	-	8,255.9	1	1,899.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1, 2획지), 상5, 상6은 공동개발 권장
			2	1,724.7	
			3	1,724.1	
			4	1,514.5	
			5	697.0	
			6	696.5	
상2	-	2,156.7	1	2,156.7	
상3	-	4,539.5	1	749.2	
			2	756.1	
			3	1,517.0	
			4	1,517.2	
상4	-	3,549.7	1	1,268.0	
			2	507.6	
			3	508.3	
			4	1,265.8	
상5	-	4,861.4	1	2,014.0	
			2	2,847.4	
상6	-	7,832.8	1	4,138.7	
			2	2,486.0	
			3	1,208.1	
상7	-	1,688.4	1	844.2	
			2	844.2	
상8	-	5,097.1	1	1,267.0	
			2	1,266.4	
			3	1,265.1	
			4	649.1	
			5	649.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상9	-	4,236.3	1	706.1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 상10, 상12(3, 4획지)는 공동개발 권장
			2	708.8	
			3	1,412.8	
			4	1,408.6	
상10	-	3,045.6	1	1,526.3	
			2	1,519.3	
상11	-	6,190.4	1	777.2	
			2	772.8	
			3	1,546.3	
			4	1,547.4	
			5	1,546.7	
상12	-	5,497.1	1	1,375.3	
			2	1,373.9	
			3	1,373.8	
			4	1,374.1	

2) 특화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5,157.0	31필지	35,157.0	
특상1	-	6,290.9	1	1,231.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연접한 2개획지에 한하여 합병허용
			2	1,277.6	
			3	1,269.1	
			4	1,244.3	
			5	1,268.1	
특상2	-	4,248.9	1	1,091.9	
			2	1,050.5	
			3	1,037.1	
			4	1,069.4	
특상3	-	2,344.7	1	1,189.9	
			2	1,154.8	
특상4	-	3,765.7	1	1,318.4	
			2	1,284.4	
			3	1,162.9	
특상5	-	7,624.8	1	1,025.1	
			2	1,007.4	
			3	1,038.5	
			4	1,078.6	
			5	1,118.5	
			6	1,158.7	
			7	1,198.0	
특상6	-	3,453.6	1	1,197.6	
			2	1,150.7	
			3	1,105.3	
특상7	-	7,428.4	1	1,030.1	
			2	1,020.7	
			3	1,021.3	
			4	1,034.0	
			5	1,110.5	
			6	1,165.0	
			7	1,046.8	

3) 업무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319,032.4	68필지	319,032.4	
업1	-	113,042.8	1	87,705.9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5,336.9	
업2	-	28,855.6	1	28,855.6	
업3	-	4,431.4	1	2,230.6	
			2	2,200.8	
업4	-	5,742.5	1	2,352.5	
			2	3,390.0	
업5	-	24,560.4	1	11,692.0	
			2	6,810.6	
			3	2,878.4	
			4	3,179.4	
업6	-	5,252.3	1	2,651.7	
			2	2,600.6	
업7	-	13,188.0	1	3,037.9	
			2	3,069.5	
			3	4,294.4	
			4	2,786.2	
업8	-	10,876.1	1	4,158.2	
			2	4,048.7	
			3	1,337.1	
			4	1,33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9	-	9,978.3	1	4,005.8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단, 업1은 필요시 3회, 업2는 5회에 한하여 법상 최 소면적 기준 이상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3,748.9	
			3	1,099.7	
			4	1,123.9	
업10	-	5,780.7	1	1,175.3	
			2	1,108.3	
			3	3,497.1	
업11	-	5,929.8	1	1,152.9	
			2	1,126.7	
			3	3,650.2	
업12	-	6,543.9	1	2,163.2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2,202.8	
			3	2,177.9	
업13	-	12,494.7	1	12,494.7	
업14	-	13,465.0	1	6,727.5	
			2	6,737.5	
업15	-	12,418.2	1	2,274.5	
			2	2,000.2	
			3	3,518.9	
			4	2,332.3	
			5	2,292.3	
업16	-	12,599.1	1	3,285.2	
			2	4,611.7	
			3	2,369.9	
			4	2,332.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17	-	3,182.5	1	784.6	-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법상 최소면적 기준 이상 2필지 이내로 분할허용 - 가구단위내의 획지합병에 한하여 허용
			2	792.9	
			3	793.4	
			4	811.6	
업18	-	3,180.5	1	815.2	
			2	793.7	
			3	792.6	
			4	779.0	
업19	-	6,025.1	1	2,948.3	
			2	1,542.5	
			3	1,534.3	
업20	-	7,698.2	1	2,706.2	
			2	2,385.8	
			3	1,285.0	
			4	1,321.2	
업21	-	2,712.8	1	2,712.8	
업22	-	2,589.2	1	1,286.8	
			2	1,302.4	
업23	-	5,435.6	1	2,724.8	
			2	2,710.8	
업24	-	3,049.7	1	1,513.7	
			2	1,536.0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

가) 유치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번호	면적(㎡)	
계			3,271.5	2필지	3,271.5	
기정	유1	-	1,345.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01	1,345.5	
기정	유9	-	1,926.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9	1,926.0	

나) 초등학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계		19,748.0	1필지	19,748.0	
기정	초1	-	19,748.0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19	19,748.0	

다) 고등학교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계		21,110.5	1필지	21,110.5	
기정	고1	-	21,110.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395	21,110.5	

2) 문화시설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기정	계		42,646.1	2필지	42,646.1	
기정	문2	-	20,249.3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9	20,249.3	
기정	문3	-	22,396.8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98	22,396.8	

3) 주차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2,553.5	10필지	22,553.5	
주1	-	2,540.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44	2,540.8	
주2	-	2,171.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51	2,171.8	
주3	-	2,000.6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77	2,000.6	
주4	-	2,868.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128	2,868.6	
주5	-	1,396.7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277	1,396.7	
주6	-	3,248.5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11	3,248.5	
주7	-	2,396.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25	2,396.4	
주13	-	1,947.4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65	1,947.4	
주14	-	1,876.1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76	1,876.1	
주15	-	2,106.6	예천군 호명읍 산합리 1486	2,106.6	

4) 주유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317.8	1필지	2,317.8	
주유1	-	2,317.8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89	2,317.8	

5)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2,537.9	1필지	2,537.9	
오1	-	2,537.9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790	2,537.9	

6) 전기공급설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144.0	1필지	144.0	
전1	-	144.0	예천군 호명읍 금능리 806	144.0	케이블헤드

2. 건축물의 용도 및 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내 모든 건축물의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 3층 이하(최고높이 : 13m이하)
		허용 가구수	• 5가구 이하(근린생활시설 계획시 4가구 이하)
		기타 용도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지하층 층별 용도는 다음과 같다. - 지하1층 : 주거 또는 교육용도 외 허용되는 모든 시설. (단, 욕실 및 취사시설이 없는 취미실, 서재 등의 설치는 허용) - 지하2층 이하 : 기계실 및 주차용도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획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하층 전체를 기계실 및 주차용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타용도의 설치를 금지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지상1층 및 지하1층에 한해 허용하되, 교육용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를 불허한다.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필로티는 타용도로 일체 전환할 수 없다. -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한다.
		높이	• 건축물의 1층 전체를 높이 2.5m 이하의 필로티 구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로 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을 용적률 및 최고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건축물 배치시 주방향은 채광, 통풍, 일조권을 고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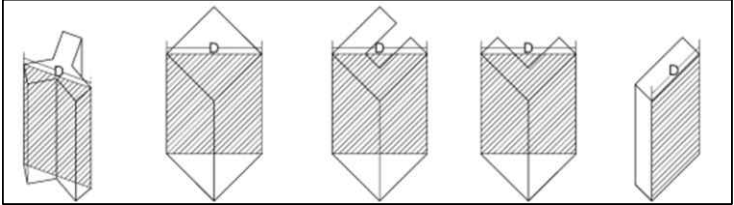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단독주택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축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주거용 건축물의 내·외장재는 환경친화적 자재 및 천연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 도로 또는 공원변에 면한 점포겸용 단독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단,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에서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경사지붕의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여,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경사지붕에는 가로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경사지붕으로 계획 시 전체 지붕면적의 1/8 이내에서 평지붕을 설치할 수 있다. 평지붕 구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 지붕형태의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가급적 가로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 평지붕으로 계획된 부분은 테라스나 정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옥외계단 및 옥상의 물탱크실을 설치할 수 없다.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하여야 한다. -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박공형식의 경사지붕을 권장한다. 단, 경관적으로 주변의 경사지붕과 조화되고 개성적인 디자인의 지붕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 한옥주택의 경우,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한식지붕에는 전통경관형성 및 지붕틀의 구조적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기, 안테나, 물탱크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층 -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중 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하여 계획한다.(단, 태양광 및 태양열 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계단 - 대문 설치시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 담장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하며,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공원에 면하는 담장은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m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한옥 주택의 경우 한국전통디자인을 포함하는 담장으로 조성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지상 1층 상단 정면에 한하여 가로형간판 또는 소형돌출간판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단, 지하층을 점포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층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수 있다. - 도청사 주변의 단독주택 용지는 자연재료 사용 및 주상호 한글 표기를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점포겸용 단독주택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D-1 ~ D-2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부분에는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고,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는 보행자가 24시간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신축 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한다.
		교통처리	- 대지 내 차량 진 · 출입 - 차량 진 · 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 · 출입구는 획지 당 1개소만 허용하며, 그 폭원은 10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는 예외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 - 주거용도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1필지 당 2대 이상’과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거이외의 용도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등 해당용도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를 더한 대수 이상으로 한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는 「주차장법」 및 관련 시 · 군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자주식 주차장으로 소요주차대수를 확보해야 하며, 이 경우 주차 출입구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1m 이상의 가각 전제를 한 곳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 경우 주차장 사이의 인접필지 경계부는 담장설치를 불허한다. 단, 필지의 구분을 위한 경계석의 표시는 가능하다. -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하고(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 제외), 장애인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타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나.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종교집회장 및 종교 시설, 제조업소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단, B1-1-4에 한함]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별표 3-나-2>에 따른다.
		용적률	
		높 이	
		주택규모 및 세대수	- 각 획지별 주택규모는<별표 3-나-2>를 따른다. - 각 획지별 세대수는 <별표 3-나-2>를 초과할 수 없다.
		배치 및 건축선	“직각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에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3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사항으로 인해 불가 피하게 직각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4항’의 지침을 따른다. “층수제한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포인트주거동 배치”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0조 제6항’의 지침을 따른다. “통경구간”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1항’의 지침을 따른다. “차경축”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은 각 획지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은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한다. - “연도형 건축물 배치구간” 또는 “어귀마당”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때, 공공보행통로나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내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공동주택에 한하며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옹벽과 마주보는 주거동 최저층 세대의 실내바닥높이가 옹벽 상단부 높이보다 높게 하여 옹벽에 의해 최저층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단, 옹벽과 주거동의 이격거리가 옹벽높이의 2배 이상이며 옹벽전면부에 식재 또는 벽면녹화 등의 경관향상을 위한 조치를 할 경우 단위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옹벽 인접 주거동 조성 예시〉  - 채광창(개구부)이 없는 건축물(측벽)과 건축물(측벽)사이에는 6미터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 2층 이하에 필로티를 설치하여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 주거동의 길이는 건축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이하 ‘건축물의 길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 ㄷ, Y,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축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축물의 길이로 한다. 〈공동주택 주거동 길이 산정 예시도(D=건축물의 길이)〉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 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각 1개 층의 호수 및 주거동 길이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10층 이하 부분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 11층 이상 : 4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60m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 10층 이하 부분 : 8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100m 이하 - 11층 이상 : 6호 이하 또는 주거동 길이 80m 이하 〈주거동 길이제한〉 〈주거동 길이 적용 예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및 층수변화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 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같은 층수의 연속된 호수가 4호(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주택단지는 8호)를 초과할 경우 동일 주거동내에서의 층수변화는 3개층 이상으로 한다. - 인접한 동간(각 동의 외벽 간 최단거리가 10m 미만인 경우)의 층수변화는 위의 규정을 따른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구릉지형을 활용한 근린공원 등 공원녹지에 직접 면한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은 경사지붕을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이하여야 한다. -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구배-세로 : 가로 의 비율 = 1 : 2.5 범위) - 최상층은 다락방 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공동주택 단지의 경계는 식재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되, 담장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1.2미터 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자연재료를 사용하거나 투시형 담장과 생울타리를 혼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를 권장하며,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결정도상에 지정된 어귀마당의 진입부 및 연도형 배치구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야간경관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6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대지내 공지	- 공동주택용지 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 그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다. 단,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의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도록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주요 오픈스페이스와 주변 공원녹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결정도에 표시된 사항을 준수하여 차경축 내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와 자유로운 연계를 위하여 결정도의 차경축의 선형을 참고하여 시점부와 종점부가 서로 연결되도록 조성한다. - 결정도에 별도의 차경축이 지정되지 않은 블록 내 획지의 경우에는 단지와 단지 및 공원녹지와의 소통을 위하여 “어귀마당”, “단지 내 보행출입구” 및 인접 공원녹지를 고려하여 공공보행통로를 1개 이상 조성한다. - 공공보행 통로는 단차가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 혹은 도로와 접하거나 인접대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한다. - 대지 내 통로의 포장은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재료 및 포장을 하여야 하며, 야간 통행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야간조명 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어귀마당”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 I 편 제1장 제12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교통체계	- 대지 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차량출입구의 도로폭원과 개소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차량 진·출입구는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한다. - 차량출입불허구간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권장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전면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불허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아파트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B1~B6, B8	교통체계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설치기준 및 다음 기준을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2/3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지상 주차장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설치하여 비상용(화물, 긴급차량)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용을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수준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차량 및 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썬큰 혹은 천창 등 자연채광이 가능하고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 지상 주차장은 환경친화형 조성기법을 활용한 투수성 포장, 식재 등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보행네트워크	“차경축”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5조 제2항’의 지침을 따른다. “단지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그 세부사항은 ‘시행지침 제1장 제1편 제14조 제5항’의 지침을 따른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는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주동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필로티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기타	- 공동주택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아파트 : 40% 이상 (임대주택은 30% 이상) ※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행복주택)은 제외한다.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공동주택은 연속적인 층수변화를 통하여 지형과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수변으로의 시야를 확보하도록 한다.

<별표 3-나-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층수

필지 번호	구분	획지 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	세대수 (호)	평균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합계	기정			548,550.5	9,803					
A-1	기정	1	60㎡이하	22,279.9	499	82	18	40	190	임대 (최고층수)
B-1	기정	1	60㎡~85㎡이하	38,905.1	764	112	22	40	220	임대
		3	60㎡~85㎡이하	31,232.2	613	112	22	40	220	
		4	60㎡이하	12,000.0	500	65	22	40	220	공공주택 (행복주택)
B-2	기정	1	60㎡~85㎡이하	46,020.2	78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2,427.5	719	112	18	40	190	
B-3	기정	1	60㎡~85㎡이하	79,372.5	1,133	112	15	40	160	
B-4	기정	1	60㎡~85㎡이하	34,252.6	489	112	15	40	160	
		2	60㎡~85㎡이하	25,650.8	366	112	15	40	160	
B-5	기정	1	60㎡~85㎡이하	26,535.5	450	112	18	40	190	
B-6	기정	1	60㎡~85㎡이하	55,901.2	1,098	112	22	40	220	
B-7	기정	1	60㎡~85㎡이하	44,405.4	873	112	22	40	220	임대
B-8	기정	1	60㎡~85㎡이하	48,917.3	830	112	18	40	190	
		2	60㎡~85㎡이하	40,650.3	689	112	18	40	190	

주1) 평균규모는 세대수 및 용적률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마권장 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시설 중 상점(단,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너비 15m 이상의 도로에 8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 시설(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부수시설로서의 장례식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 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 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 : 20m 이하)
				4층 이하(최고높이 : 20m 이하)
		해당블록		근생 1~8
				근생 9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도청사와 인접한 부분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고려하여 구분별 건축행위를 지양하며, 이에 부합하는 입지와 건축물 및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통역사가 살아 있는 자연친화적 명품도시로서의 디자인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도청사와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나 외관의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 한옥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근생11~13)의 모든 건축물은 형태 및 외관에 관해 상단에 규정된 사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6항에 의한 한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의 주요 테마인 역사도시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외벽의 재료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채는 건축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가급적 페인트의 사용을 지양하여, 재료의 물성,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게 한다. 단, 필요에 의하여 채색을 할 경우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퍼센트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건축물 구조는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피복철골조, 컨테이너 등의 구조를 제한하여 가로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가로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 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탑 - 경사지붕 설치 시 경사도는 1:1~1:3의 범위로 하며,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고, 인접건축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평지붕 외곽에 경사지붕, 파라펫 등을 설치하거나 경사지붕 외곽에 평지붕을 배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옥상 및 지붕에는 투시형 또는 철재 파라펫, 옥상조경을 활용하여 옥상시설물을 차폐하여야 하며, 안전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 실외기, 안테나 등의 설치 시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계단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로 인한 보행 안전성 문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1.2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재료는 생울타리,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린 생활 시설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제1종 전용주거 지역)	근생1~4, 근생9	대지내 공지	-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청사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공공청사와의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한계선 내에 수목을 활용한 차폐를 고려한다. - 포장의 재료 및 색채는 가급적 전면보도의 보도패턴을 우선 준용하고 개별포장 선정시 인접지역의 포장패턴과 조화를 고려하여야 하며 바닥은 내구성과 특수성이 있는 포장 재료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보도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도로 변 전면공지의 바닥은 연접한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 보행에 지장이 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결정도에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필지는 지정된 곳으로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 진·출입구는 필지 당 1개소만 허용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 이상을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출입 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기타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라. 상업업무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상1~1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종교집회장의 경우 건축물 부속용도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 상1~4, 상7~12 - 상5~6
		건폐율		80% 이하 8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700% 이하
		높 이		- 최고층수 20층 이하 (최고높이 : 85m 이하) - 최고층수 15층 이하 (최고높이 : 65m 이하)
				- 최저층수 3층 이상 - 상업지 중앙부 녹지축방향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 자 형태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할 것을 권장함
특화상업 시설 (근린상업 지역)	특상1~ 특상7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미술소, 단란주점, 장의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 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권장		1층부 보행친화형용도(카페·베이커리 등 식음시설, 서적·기념품·의류 등 소매점)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최고높이 : 22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제 획 내 용
일반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업무시설
			• 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50%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블록	• 업3, 업4-1, 업6~12, 업14, 업15-4-5, 업16~24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공업무 시설 (준주거 지역)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시·군 조례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함. 단, 도매시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격리병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나목 내지 마목, 바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촬영소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이전 기관의 업무시설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업무시설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내지 아목 • 부속용도로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 공공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은 주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부속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10% 이하에 한한다.
		해당블록	• 업1~2, 업4~2, 업5, 업13, 업15-1~3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10층 이하 - (최고높이 : 45m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 특상7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 대지외곽 경계 중 공원, 도로변 등의 공공공간과 인접할 경우 가로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시설용지에 벽면지정선을 지정하며, 그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결정도에서 지정한 벽면지정선은 다음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가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경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건축물의 주전면은 2개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에 위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전면에 준하는 외관설계를 권장한다. 단, 차폐되어 가로변에서 인식할 수 없거나, 특별한 디자인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 20m 이상 도로에 면한 외벽면(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 공공공지에 면한 외벽면
		형태 및 외관	1층 바닥높이 - 1층에 여러 개의 점포가 있는 경우, 개별 점포로의 출입만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의 설치를 불허한다. -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와 차이를 1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벽면지정선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용도상 부득이하여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 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지붕의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 도입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과 휴게·녹지공간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은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로 조성한다. - 담장, 대문, 계단 - 담장 설치의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하게 담장 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하되, 화관목류 생울타리 또는 목재 등의 친환경소재 및 ‘한국적 전통 디자인’을 포함하는 구조물(예>꽃담) 등의 사용을 권장하며, 시각적 개방감(투시율 30%이상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하여 다른 재료의 투시형(투시율 80% 이상) 담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의 지침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업시설 업무시설 특화 상업시설 (일반상업 지역, 근린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상1~상12 업1~업24 특상1~ 특상7	대지내 공지	결정도상에 지정된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은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교통처리	- 대지내 차량 진출입에 관한 사항은 결정도를 따른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대지내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전면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 설치에 ‘주차장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포장은 친환경 소재(투수성 포장)의 사용을 권장한다. 단, 필로티 등 상부가 가려진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필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의 조경은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20대 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도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위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 대지내 자전거 보관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면도로에 인접한 대지내 공지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보행 네트워크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보행통로는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4조’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기타	- 상업시설용지 중 상1(1, 2획지), 상5, 상6, 상10, 상12(3, 4획지)는 광로변 전면성을 고려한 배치 및 공동개발을 권장한다. - 업무용지2 내 포함되어 있는 임상양호지는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업업무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일반·공공업무시설 : 20% 이상 [단, 제2행정타운(업1~업24) 내 업무시설은 30% 이상으로 하고, 업무용지2 내에 임상양호지를 존치하여 생태면적률에 포함]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마.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1) 교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유1, 9	용도	허용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의한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기타	보육시설 및 학원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하 범위에 한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 4층 이하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초· 고	용도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초, 중, 고등학교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건폐율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40% 이하,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용적률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 자연녹지지역 : 100% 이하
		높 이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 : 5층 이하, 자연녹지지역 : 4층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치원 (제1종 일반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 학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유1, 9 / 초1, 고1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시행지침 제Ⅳ편 제4장’ 및 다음의 지침을 따른다. - 유치원은 현란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학교시설은 다양한 색채, 재료, 형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긴 외관을 보완하기 위해 시각적 분절을 도입한 디자인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시행지침 제Ⅳ편 제5장’의 지침을 따른다.
		대지내 공지	- 결정도 상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통학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제1편 제1장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운동장은 인근 공원, 광장,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계 배치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주민 이용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보행 네트워크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며, 보행자전용도로나 공원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대지 내 보행로는 자동차도로와는 분리하여 설치하며, 교차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우선구조’로 설치한다.
		기타	- 저탄소 녹색도시, 범죄예방 안전도시, 장애물 없는 도시, 여성친화적 도시 및 U-City에 관한 사항은 ‘시행지침 제Ⅲ편’의 각 해당지침에 의한 규정을 따른다. - 교육시설용지의 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학교 및 유치원 : 30% 이상 - 생태면적률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기준은 환경부의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을 따른다.

2) 문화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 시설 (일반 상업지역)	문2-3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라목, 바목, 아목, 자목 및 카목 내지 하목(파목의 골프연습장 중 옥외 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상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옥외 골프연습장 제외)
			허용
			불허
			권장
			기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 이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8층 이하(최고높이 : 40m이하)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6~7 (일반상업지역) - 주 5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180% 이하
		높 이		6층 이하 (최고높이:27m이하) 3층 이하 (최고높이:15m이하)
		용도	허용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한하며 건축연면적의 30% 이하로 설치가능.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이하에 한함. - 관리사무소·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 간이매점 및 자동차의 장식품판매점 -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불허	- 종교시설 - 운수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원, 장의사, 안마시술소, 총포판매사,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고시원 -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허용용도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군 도시계획조례, 학교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
		해당블록		- 주 1~4 (준주거지역) - 주 13~15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50% 이하
		높 이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5층 이하 (최고높이:23m이하) - 최저층수 2층 이상, 최고층수 4층 이하 (최고높이:19m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근린 상업 지역)	주1~7, 주13~15	배치 및 건축선	• 주차장용지의 주차장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와 「주차장법」 및 사군「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강화된 규정으로 설치기준을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지상1~지하2층에 우선 배치하며, 그 다음으로는 최상층부터 아래층으로 연속하여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배치는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출입구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한다. 단, 진출입이 금지된 구간은 제외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자주식으로 설치하되,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건축선(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등)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르며, 결정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펫 등으로 차폐하도록 권장하여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 형태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변 건축물 방향으로 건축물을 개방(창문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예외로 한다. - 생태주차장 조성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을 권장한다.

4) 주유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소 (자연녹지 지역)	주유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부대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 건물 옥상의 구조물 및 옥탑은 건너편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파라넷 등으로 차폐 하고 건물 옥상은 도시생태복원을 위하여 가급적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인접한 대지경계부의 담장 설치는 수목식재, 녹지공간 또는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할 것을 권장하며, 불가피하게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투시형 담장은 1.5m 이하, 생울타리는 1.2m 이하로 하도록 한다.

5) 기타시설용지

가) 오수중계펌프장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수중계펌 프장 (제2종 일반주거지 역)	오1	용도	허용	오수중계펌프장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4층 이하(최고높이 : 19m이하)

나) 전기공급시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전기공급 시설 (자연녹지 지역)	전기1	용도	허용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2층 이하

3.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공공보행통로, 단지 내 보행출입구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공공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의 폭원은 결정도에서 지정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폭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폭원은 6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와 도로(단지 내 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자우선구조’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 제4호에 의해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단, 지형여건 등으로 경사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지 내 보행 출입구	“단지 내 보행출입구”라 함은 보행자가 단지 내외부로 직접 출입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보행출입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 유효폭원은 4미터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주출입구로 조성될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마감높이는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보행출입구의 위치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서 양측으로 각각 10m 폭의 범위 내에서 이동가능하다.

나. 보행자우선구조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보행자 우선구조	“보행자우선구조”라 함은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미터 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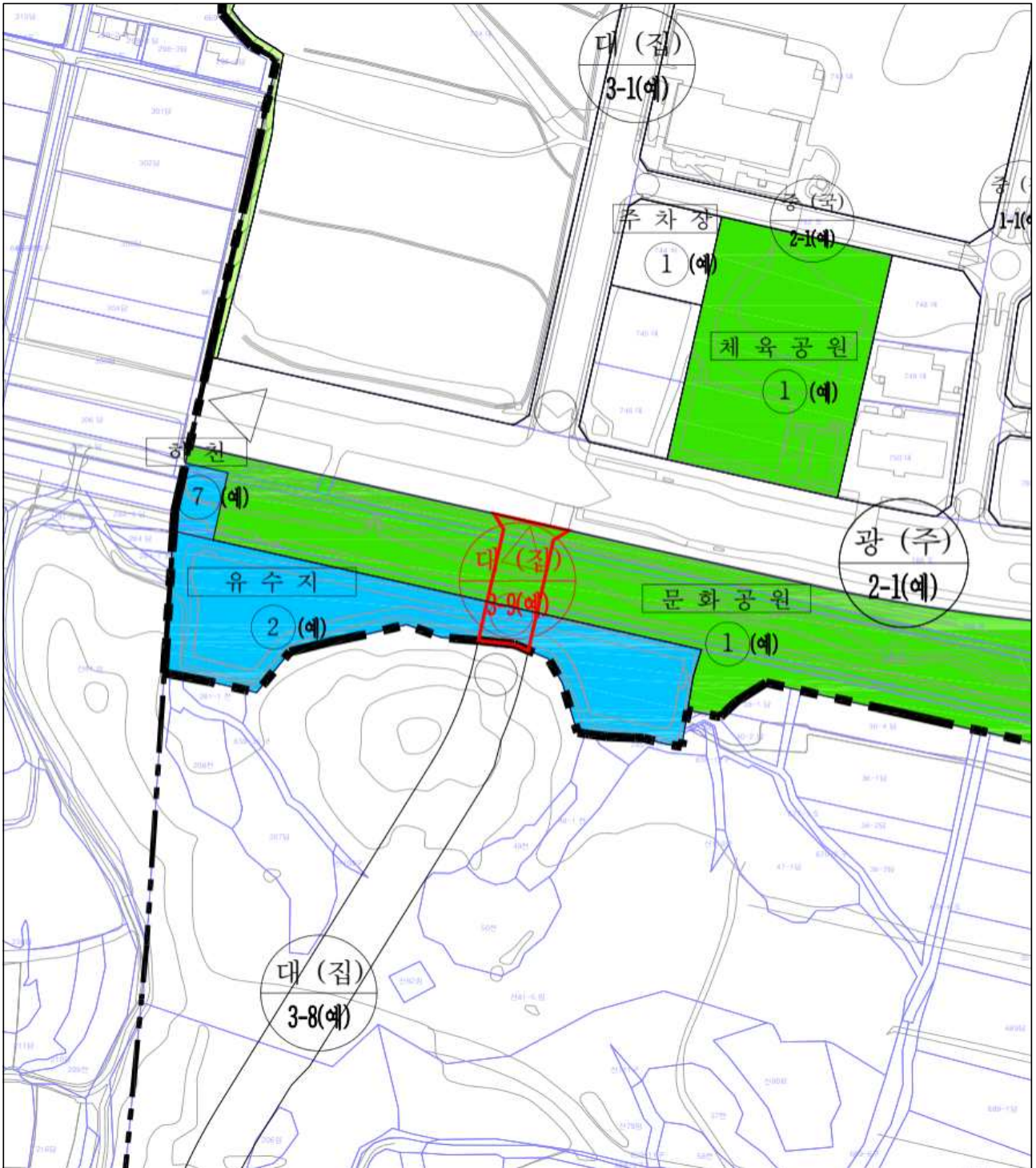
4.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해당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가.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에 관한 계획

구분	조성기준
전면공지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한계선(벽면지정선 포함)과 전면도로 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학교시설은 결정도에 별도 표시)를 말하며,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조성한다. 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면공지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주정차를 금지한다. - 차량 진출입구와 전면공지의 경계부에는 전면공지로의 차량 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를 설치하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지를 말한다. - 공개공지는 결정도에서 지정한 곳에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성한다. - 공개공지의 규모는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최소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를 6미터 이상으로 한다. -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해야 하고, 인접한 공공공간에서도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경사도 1/12 이하의 신체장애이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 바닥포장은 보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다. - 기타 시설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따른다.
공공조경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 소음 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 시 이를 시행한다.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제시한 기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한 상가, 유치원 및 관리시설 등(이하 “부대복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나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리게 설치할 수 있으며,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예천군수(맑은물사업소장)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432-1
점용면적	일시 : 869.28㎡ 영구 : 265.63㎡
점용목적	공작물의 설치
사업개요	예천취수장 집수매거 신설 및 현장사무실
점용기간	일시 : 2024년 11월 07일 ~ 2025년 06월 30일 영구 : 2024년 11월 07일 ~ 영구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단의 신고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2항)

- 도안 신고 후 전단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나.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심의 절차를 생략(안 제 24조제3항)

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수거한 사람에게 실비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

라.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신설(안 별표 6)

-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3.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수)까지 예천군수 (참조:건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건축과
- 전화 : 054-650-6355, 팩스 : 054-650-6359
- 전자우편 : twteey5042@korea.kr

5. 기타사항

이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 (www.ycg.kr) 『군정소식-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예천군청 건축과 (054-650-6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신고필증 교부에”를 “신고증명서 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단의 경우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를 “수수료”로 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① 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12만원
- 0.5㎡ 이상 0.8㎡ 미만		17만원
- 0.8㎡ 이상 1㎡ 미만		25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33만원
- 1.3㎡ 이상 1.6㎡ 미만		42만원
- 1.6㎡ 이상 2㎡ 미만		58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67만원
- 2.3㎡ 이상 2.6㎡ 미만		92만원
- 2.6㎡ 이상 3.0㎡ 미만		117만원
라) 면적 3㎡ 이상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면적 1㎡ 미만		
- 0.5㎡ 미만		7만원
- 0.5㎡ 이상 0.8㎡ 미만		10만원
- 0.8㎡ 이상 1㎡ 미만		13만원
나) 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17만원
- 1.3㎡ 이상 1.6㎡ 미만		25만원
- 1.6㎡ 이상 2㎡ 미만		42만원
다) 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미만		50만원
- 2.3㎡ 이상 2.6㎡ 미만		58만원
- 2.6㎡ 이상 3.0㎡ 미만		75만원
라) 면적 3㎡ 이상		8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 미만 - 1㎡ 이상 2㎡ 미만 - 2㎡ 이상 3㎡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 이상 3.7㎡ 미만 - 3.7㎡ 이상 4.4㎡ 미만 - 4.4㎡ 이상 5㎡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 6㎡ 이상 8㎡ 미만 - 8㎡ 이상 10㎡ 미만 라) 면적 10㎡ 이상 - 10㎡ 초과하는 면적 1㎡당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3만원 50만원 58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8천원 장당 13천원 장당 17천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17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 제 <2019. 12. 12.>	<삭 제>	<삭 제>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제5호	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 제2항	25만원 45만원 100만원
6.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하 나. 30일 초과 90일 이하 다. 90일 초과	법 제20조 제1항 제1의3	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5백만원)

[별지 제2호의2서식]

전 단 신 고 필

신고번호: 00-0000
일련번호: No.00
. . . 까지 00장 배포

예천군수

□ 비 고

- 신고번호: 신고 수리 시 안내하는 번호
- 일련번호: 신고한 장수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식별번호
(1번부터 신고한 장수까지 작성)
- ※ 일련번호는 공란으로 출력 후 수기로 작성 가능
- ※ 날짜 및 신고한 매수(총량)는 별도 입력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생략)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사항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u>신고필증 교부에</u> 같음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 ----- <u>신고증명서 발급을</u> ----- ----- <u>. 다만, 전단의 경우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 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같음할 수 있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수수료) ①·② (생략)	제24조(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u>	③ ----- ----- <u>수수료</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신설>	<u>제26조(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u>

운영) ① 도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하여 명함식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 및 수거하여 제출하는 사람에게 그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금의 지급 대상·범위·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건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07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장부지에서 허용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확대(안 제11조)

-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대상인 ‘공장부지 내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를 추가

나. 건축지도원 자격 기준 개선(안 제15조)

- 건축지도원의 자격 기준에 대하여 권고안을 수용하여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추가

※가, 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IV」 관련 사항 반영{기획예산실-10116(2024. 7. 30.)}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규정 변경(안 제25조제1항)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 높이 10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라.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 조항 중 상위법령 조문 재기재에 불과한 부분 삭제(제27조제2항)

- ‘가설건축물, 공작물 축조신고 미이행, 착공신고 미이행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삭제

마.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위임사항 신설(안 제27조의3)

-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라, 마: 「2024년 자치단체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계획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자료 제출」 관련 사항 반영{기획예산실-5324(2024. 4. 24.)}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 1) 전자우편(이메일) : xuanzhen1124@korea.kr
-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4호 중 “공해배출저장시설”을 “공해배출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 치금) ① (생략)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 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 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 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 음 각 호에 의한다. 1. (생략) 2.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예 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 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 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제 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 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 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2 개월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4. (생략) ③ ④ (생략)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 치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 칙」----- ----- ----- ----- ----- ----- ----- ----- ----- -----. 3. 4.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생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3. (생략)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 9. (생략)

제1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략)

<신설>

② (생략)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

제1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 공해배출저장시설, 기계보호시설 및 임시창고-----

5. ~ 9. (현행과 같음)

제15조(건축지도원)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
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
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
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 ③ (생략)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생략)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④ (생략)

<신설>

③·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일괄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1)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2)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정비대상 조례

연번	조례명	조문	비 고
1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9조제2항	조례안 제1조
2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제4항	조례안 제2조
3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조례안 제3조
4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9조	조례안 제4조
5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2항	조례안 제5조
6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조례안 제6조
7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15조	조례안 제7조
8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조례안 제8조
9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3조	조례안 제9조
10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제5조제2항	조례안 제10조
11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조례안 제11조
12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조례안 제12조
13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3조	조례안 제13조

연번	조례명	조문	비 고
14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조례안 제14조
15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제2항	조례안 제15조
16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의2제1항 제1호	조례안 제16조
17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14조	조례안 제17조
18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조례안 제18조
19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조례안 제19조
20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19조제2항	조례안 제20조
21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26조	조례안 제21조
22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조례안 제22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aya112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재무과

3) 팩스 : 054-650-61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전화 : 054-650-68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한다.

제9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0조(「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1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조(「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3조(「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4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6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로 한다.

제17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8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9조(「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0조(「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1조(「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업기
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제2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곤충생
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
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2조(「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수 있다.	-----.
-------	--------

제3조(「예천군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준용)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4조(「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9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29조(준용) -----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5조(「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6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7조(「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지방자치단

<u>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및 「 <u>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을 준용한다.	<u>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u> 및 「 <u>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u> 」----- -----
--	---

제8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예천군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 준용한다.	제21조(준용)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

제9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0조(「예천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1조(「예천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준용)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2조(「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3조(「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제14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준용) 온천장 운영에 관하	제13조(준용) -----

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

제15조(「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사용료) ① (생략) 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16조(「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	-----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군수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를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99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종량제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읍·면별 지점 및 판매망을 갖춘 금융기관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1조의2(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판매업무 위탁) ① ----- ----- ----- ----- ----- ----- -----.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78조----- ----- ----- ----- -----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17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제14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회계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

제18조(「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6조(준용규정) 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준용규정)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19조(「예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생략)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제20조(「예천군 농산물가공기술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9조(사용료) ① (생략)	제19조(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공시설(장비) 사용료는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② -----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군세 징수 조례」을 준용한다.	제26조(준용) ----- -----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

제2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	제15조(준용) ----- -----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예천군 보조금 관리 등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군 수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나. 개정대상 : 조례 9건 (8개 소관부서)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기획예산실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안 제1조)
2	재무과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안 제2조)
3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3조)
4	종합민원과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안 제4조)
5	안전재난과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6	건축과	예천군 경관 조례(안 제6조)
7	건축과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제7조)
8	환경관리과	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8조)
9	보건소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9조)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추진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정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다목의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조(「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3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물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전문가 제43조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예천군 경관 조례」의 개정) 예천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호나목 중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제7조(「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내시설물의 종류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가축사
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구분란 중 “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9조(「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
정)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u>조</u> <u>건</u> 1. ~ 7. (생 략)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나. (생 략) 다. <u>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u> 및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라. ~ 마. (생 략) 9. ~ 12. (생 략)	[별지 제4호서식] <u>조</u> <u>건</u> 1. ~ 7. (현행과 같음) 8.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u>국가유산 공사(국가유산과 연결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u> ----- ----- ----- ----- ----- 라.~마. (현행과 같음) 9. ~ 12. (현행과 같음)

<u>「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재위원·전문가</u> 2.·3. (생략) ② (생략)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u>「문화재보호법」</u>,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u>관한 법률」 제8조 및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전문가</u>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준용) ----- -----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	--

제4조(「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u>문화재</u>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u>국가유산</u> ----- -- 6. (현행과 같음)

제5조(「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생략)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재, 붕괴 5. ~ 8. (생략)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가유산</u> ----- ----- 5. ~ 8. (현행과 같음)

제6조(「예천군 경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23조(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2. (생략)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제23조(심의대상 사회기반시설사업)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가. (생략) 나. 국가, 도 및 군의 <u>지정문화재</u> 다.·라. (생략) 제24조(심의대상 건축물)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략) 2.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기준 등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3.·4.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u>지정문화유산</u> 다.·라.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대상 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산청 ----- 3.·4. (현행과 같음)
---	---

제7조(「예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개정)

[별표]		개 정 안	
현행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안내시설물	도로 및 건물/주차장 /공공기관/자전거도 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 <u>문화재</u> 안내, 영상정		

[별표]		개 정 안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별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9조 관련)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1. 검토대상 : 공공시설물 등	
분류	시설물의 종류	비고	
안내시설물	----- ----- ----- ----- <u>국가유산</u> -----		

	보 관련 환경정보 표 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 설, 그 밖의 각종 공 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 ----- ----- ----- ----- -----	

제8조(「예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table> <tr> <th>구분</th><th>제한거리</th></tr> <tr> <td><u>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u></td><td>·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td></tr> </table>	구분	제한거리	<u>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u>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table> <tr> <th>구분</th><th>제한거리</th></tr> <tr> <td><u>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u></td><td>·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td></tr> </table>	구분	제한거리	<u>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u>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구분	제한거리								
<u>문화재 또는 문화재보호구역</u>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구분	제한거리								
<u>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u>	· 구역을 포함한 경계구역에서 500m이내 지역								

제9조(「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

1. (생략) 2.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3. ~ 6. (생략) ②·③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3.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리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

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족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

화유산

-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

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등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군



1. 개정 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24. 5. 17.)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용어 및 인용 법령 일괄 정비

- (명칭 개선)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으로 변경

나. 개정대상 : 규칙 3건 (2개 소관부서)

연 번	부 서	조 례 명
1	총무과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제1조)
2	총무과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2조)
3	문화관광과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3조)

3.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11월 중 추진 예정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행정문화복지국 주민행복과 의뢰 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학예연구 학예일반 연구관·연구사란 중 “문화재관리학”을 “국가유산관리학”으로 한다.

별표 7의 제2호가목 시설 건축란 중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 한다.

제2조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강사 수당 기준 A급 및 B급 기준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중요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문화재 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을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함)”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제1조(「예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 <table><tr><th>직렬</th><th>직류</th><th>계급(연구관·연구사)</th></tr><tr><td>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문화재관리학</td></tr></table>	직렬	직류	계급(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재관리학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제15조제4항, 제5항 및 제19조제1항 관련)_관련) <table><tr><th>직렬</th><th>직류</th><th>계급(연구관·연구사)</th></tr><tr><td>학예연구</td><td>학예일반</td><td>국가유산관리학</td></tr></table>	직렬	직류	계급(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가유산관리학
직렬	직류	계급(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재관리학											
직렬	직류	계급(연구관·연구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가유산관리학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 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h>직렬</th><th>직류</th><th>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th></tr><tr><td>시설</td><td>건축</td><td>문화재수리기술자</td></tr></table>	직렬	직류	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문화재수리기술자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 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 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table><tr><th>직렬</th><th>직류</th><th>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th></tr><tr><td>시설</td><td>건축</td><td>국가유산수리기술자</td></tr></table>	직렬	직류	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직렬	직류	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문화재수리기술자											
직렬	직류	계급(5급, 6급, 7급, 8급, 9급)											
시설	건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제2조(「예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행	개정안
[별표 1] 강사수당 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1] 강사수당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강사수당 (1시간당)	구분	기 준	강사수당 (1시간당)
A급	·중요무형문화재 및 기능 예능 보유자	90,000 원 이내	A급	· <u>중요무형유산</u> -----	----- --
B급	·중요무형문화재 및 기능 예능 보유자 후보, 이수자, 전수생	80,000 원 이내	B급	· <u>중요무형유산</u> ----- -----	----- --

제3조(「예천군 예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6조(매도신청) ① 군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매도신청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u>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u> (<u>문화재</u> 매매업자의 경우) 5. · 6. (생략) ② (생략)	제6조(매도신청)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u> (<u>문화유산</u> -----) 5.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수리·복원 등이 불가능한 유물은 「 <u>문화재 보호법</u> 」 및 같은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장품의 수리·복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u> 」 ----.

[별지 제4호서식]

구비 서류	3. <u>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u> <u>1부(문화재 매매업자에 한함)</u>
----------	--

[별지 제4호서식]

구비 서류	3. <u>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u> <u>본 1부(문화유산 매매업자에</u> <u>한함)</u>
----------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거례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2023. 8. 8.>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가. 삭제 <2023. 3. 21.>

나. 삭제 <2023. 3. 21.>

다. 삭제 <2023. 3. 21.>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
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② 이 법에서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
적·경관적 가치 습득을 통하여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하고 민
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에 기여하는 교육을 말하며, 문화유산교육
의 구체적 범위와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
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2. 시·도지정문화유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3. 문화유산자료: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

④ 이 법에서 “등록문화유산”이란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 중
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 국가유산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
산

2. 시·도등록문화유산: 시·도지사가 제70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문화유산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보호물”이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⑨ 이 법에서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화”란 문화유산데이터의 생산·수집·분석·유통·활용 등에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융합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문화유산데이터”란 문화유산지능정보화를 위하여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관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⑫ 이 법에서 “문화유산지능정보기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중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⑬ 이 법에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유산 기록 및 지식·정보·기술 등을 이용한 창작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말한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 4의2. “자연유산자료”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천연기념물등”이란 천연기념물, 명승, 시·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를 말한다.
6. “보호물”이란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7. “보호구역”이란 일정한 지역이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천연기념물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지정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이란 자연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자연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가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전통조경”이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공

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전통적 공연·예술
-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어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이수자”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전승자”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명예보유자”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중에서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 및 전승교육사 중에서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9. “전수교육”이란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가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11. 삭제 <2023. 8. 8.>
12. “전승공동체”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무형유산을 지역적 또는 역사적으로 공유하며 일정한 유대감 및 정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무형유산을 실현·향유함으로써 전승하고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예천군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안 제3조제2항)

- 총괄조정관 : 삭제
-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나.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 위원 정비(안 제13조제2항)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안전 재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thsrh32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안전재난과

3) 팩스 : 054-650-61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안전재난과(전화 : 054-650-615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각각 “통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로 한다.

4.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을 “재난상황 및”으로 한다.

제5조 중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을 “차장·통제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통제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총괄조정관, 통제관”을 “통제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4조제1항제6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 상황 보고서 작성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재난문자발송 등) 다)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요청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라) 본부장 주재 회의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마)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영상회의 준비) 바)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 지진 발생 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아)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자) 인명·재산 피해상황 및 재난지역 수습상황관리
	2)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지원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

		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다) 여론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구 분		업무와 역할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사망·실종자 장례지원 및 유족관리: 주민행복과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 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 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 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 통

구 분		업무와 역할
		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시설 응급복구반(9) : 농정과, 산림녹지과, 축산과, 농촌활력과, 건설교통과(2), 안전재난과, 건축과, 맑은물사업소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 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도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ystem : DRSS) 운영 및 가동 나) 피해 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다) 장비·자재 부족 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라) 타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구 분		업무와 역할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마) 재난관리자원의 해당부서 및 관리기관별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대중교통 소통 등 교통 전반 총괄 나)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협의·지시에 관한 사항 다) 버스 우회 노선 및 마감 시간 연장에 관한 사항 라) 물자 등 긴급 수송 등 수송체계 구축 마) 교통상황 안내 및 홍보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초기 이후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수해주택 지원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구 분		업무와 역할
	· 구급반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기관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업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시·군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시·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재난대응협업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 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국	주관부서
1. 교육부	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
3. 외교부	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
4. 법무부	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5. 국방부	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
6. 행정안전부	가. 청사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재무과
7.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해당 실과소
8.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경제농림국	축산과
	나. 저수지 사고	경제농림국	농촌활력과
9.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전력 사고 라.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10.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11.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다.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라. 황사 마.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의 사고, 미세먼지	건설도시국	환경관리과
	바.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맑은물사업소
12.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농림국	지역경제과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국	주관부서
13.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건설도시국	건축과
14. 해양수산부	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15. 행정안전부	가.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건설도시국	도시과
	나. 화재·위험물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라.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마.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16. 금융위원회	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
Ⅱ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행정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19.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경제농림국	산림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자연재난 발생 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풍수해(태풍·호우·대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편성기준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2+ α + β + γ 명
	상황관리 총괄반 (2명+ α)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 안전재난과 1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α 명(재난상황에 따라)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 사회복지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 환경관리과 1명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 총무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 해당 실·과 1명씩 (8개 부서 9명)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 지역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1)	· 홍보소통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 안전재난과 1명
		아) 교통대책반(1)	· 건설교통과 1명
		재)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 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관리반(1)	· 사회복지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1)	· 예천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구급반(1)	· 예천소방서 1명
		파) 협업기능반 지원	· 각 부서 협업 기능반 β 명(상황에 따라)
12개읍·면(γ)		· 읍·면 직원(1/4근무) 및 대피지원근무자	

비고(근무방법)

-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재난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 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4+ α + β + γ + δ 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α)	가)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 안전재난과 2명 · 재난수습주관부서 α 명(재난상황에 따라)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	
		라) 행정지원팀(1)	· 총무과 1명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 사회복지과 1명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 환경관리과 1명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 총무과 1명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 해당 실·과 1명씩 (8개 부서 9명)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 지역경제과 1명
		바) 재난수습 홍보반(1)	· 홍보소통과 1명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 안전재난과 1명
		아) 교통대책반(1)	· 건설교통과 1명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 보건소 1명
		차) 자원봉사 관리반(1)	· 사회복지과 1명
		카) 사회질서 유지반(1)	· 예천경찰서 1명
		타) 수색, 구조·구급반(1)	· 예천소방서 1명
		파) 협업기능반 지원	· 각 부서 협업 기능반 β 명(상황에 따라)
	12개 읍면(γ 명)		· 읍·면 직원(1/4근무) 및 대피지원근무자
	유관 기관(δ 명)		· 육군3260부대 2대대, 공군제16비행단, 예천교육지원청, KT 예천지사, 한국전력 예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사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근무인원	
	24+ α + β + γ + δ 명	
	상황관리 총괄반 (4명+ α)	가) 반 장(1)
		나)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상황보고서 작성팀(1)
		다)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 분석 평가팀(1)
		라) 행정지원팀(1)
	협 업 기능반 (20명+ β)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1)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1)
		다) 긴급 통신 지원반(1)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9)
		마) 에너지 기능복구반(1)
		바) 재난수습 홍보반(1)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1)
		아) 교통대책반(1)
		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1)
		차) 자원봉사 관리반(1)
		카) 사회질서 유지반(1)
		타) 수색, 구조·구급반(1)
		파) 협업기능반 지원
	12개 읍면(γ 명)	
	유관 기관(δ 명)	

비고(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군 수		
차 장	부 군 수		
통 제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		
담 당 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	인 원	총 $8 + \alpha + \beta + \gamma$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급 1명	
	1)재난상황 총괄반(7명)	가) 상황관리 총괄팀 (3명)	· 안전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2명
		나) 수습상황 파악팀 (4명)	· 안전재난과 직원 1명 · 재난수습 주관부서 직원 등 3명
	2)협업기능반 (α)	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사회복지과, 주민행복과
		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환경관리과
		다) 긴급통신 지원반	· 총무과
		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 해당부서
		마)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기능복구반	· 지역경제과
		바) 재난수습 홍보반	· 홍보소통과
		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안전재난과
		아) 교통대책반	· 건설교통과
		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	· 보건소
		차)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 사회복지과
		카) 사회질서 유지반	· 예천경찰서
		타) 수색, 구조·구급반	· 예천소방서

	3)재난대응협업반(β)	· 육군 3260부대 2대대, 공군16전투비행단, 한국가스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경북북부지사, 한국전력예천지사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4)현장지원반(γ)	· 해당 재난관리 실·과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재난상황총괄반·재난대응협업반·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u>총괄조정관, 통제관</u> 및 담당관을 둔다.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 ----- ----- ----- -- <u>통제관</u> ----- -----.
② 본부장, 차장, <u>총괄조정관, 통제관</u>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u>통제관</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총괄조정관 : 기획예산실장</u>	<삭 제>
4. <u>통제관 : 안전재난과장</u>	4. <u>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국의 장</u>
5.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u>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u>	5. ----- <u>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u>	<삭 제>

4. 통제관 : <u>재난</u> 수습업무 전반 통제	4. ----- <u>재난상황 및</u> ----- --
5. · 6. (생략)	5. · 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u>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u>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 ----- ----- --- <u>차장·통제관</u> ----- ----- -----.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 ② (생략)	제9조(상황판단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③ ----- ----- ----- -----.
1. <u>총괄조정관, 통제관</u> , 담당관	1. <u>통제관</u>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략)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② ----- ---.
1. <u>총괄조정관, 통제관</u> , 담당관 및 소방서장. 단, 소방서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 또는 예천119안	1. <u>통제관</u> ----- -----. ----- -----

전 센터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3. (생략) ③ ~ ⑤ (생략)	----- --. 2.·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